

수원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334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지창구

청 구 원 인

1. 사건내역

원고는 2020.8.10.일 경 금6천만원을 소외 D의 계좌로 송금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피고 임연숙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C)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2.피고의 부당이득

피고는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금액상당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3.사실조회신청

원고는 피고의 성명과 전화번호(수신거부), 송금된 은행계좌번호,남편이라는 소외 D의 불확실한 주소와 송달가능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소송유지 및 향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송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